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옥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(법 제46조의2제5항제8호)으로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를 제28조의2로 하고,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) 법 제46조의2제5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조사·연구, 교육·홍보, 국제교류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28조(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) 법 제46조의2제5항제8호에</u> <u>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</u> <u>이란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</u> <u>관련 조사·연구, 교육·홍보, 국</u> <u>제교류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</u> <u>말한다.</u>
<u>제28조(생략)</u>	<u>제28조의2(현행 제28조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87